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 228 회 임시회  
[ 2019.3.6.(수)10:00 ]

#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 목 차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 1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 8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22호
- 나. 제 출 자 : 김진천 의원 외 8명
- 다. 제출일자 : 2019년 2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2월 25일

## 3. 제안이유

현재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주차요금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안 제4조제1항)
  -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2)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3)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4) 그 밖에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1)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  
다.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5조)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19. 2. 25. ~ 2019. 3. 4.(의견제출 없음)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병무청 훈령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한 대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예우대상자의 지원과 선양에 노력하고자 하였음.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자 안 제4조(지원)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용과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홍보)의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참고로 서울지방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병역명문가는 전국적으로 4,890대표 가문이 선정되었고 그 중 서울시는 685가문이고, 마포구는 21대표 가문으로 전국 대비로는 0.4%이고 서울시 대비로는 3.0%에 해당됨. [참고자료 <표 1~3> ]

〈표 1〉 병역명문가 선정 대표가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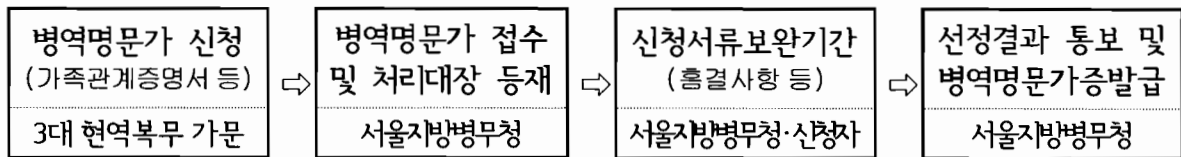
구분	전국	서울시	마포구	비고
대표가문 수 (비율, %)	4,890 (100)	685 (14.0)	21 (0.4)	2018.12.31.현재

※ 자료출처: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대표가문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표 2〉 감면내용 및 지원근거 주요사항

구분	감면 세부내용	개정조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요금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비고에 24. 신설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마포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수강료 나.감면기준 신설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 신설

〈표 3〉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절차



※ 처리기간 : 약 30일(신청일 익월 20일까지)

- 따라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한대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관련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선양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회기에 본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더라도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감면 범위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선양 및 신규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병무청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1.>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치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개정 '10.5.4, 개정 '12.11.21, 단서신설 '12.11.21, 개정 및 단서삭제 2013. 12. 11.>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0.5.4, '12.11.21, 2013. 12. 11.>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12.11.21, 개정 2013. 12. 11.>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1. 8>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 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1. 30.>[본조신설 2013. 12. 11.]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08.12.12>)**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8.12.12, '10.5.4, '12. 2. 1, '12.11.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18.12.2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노외주차장 : 월 5만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 주차장에 적용한다.

(2.~ 23. 이하생략)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이하생략)**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이하생략)

나. 감면기준 (신설)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하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5.11.19, 2017.2.9>

1.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이하생략)

#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16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2월 22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2월 25일

## 3. 제안이유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는 마포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및 용도, 운용관리(안 제3조~제7조)
-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8조~제9조)
- 라.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안 제10조~제12조)
- 마. 용자·지원한도 및 이율, 용자금의 상환 등(안 제13조~제14조)
- 바.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안 제15조)
- 사. 용자계약해지 및 용자금의 반환·회수(안 제16조~제17조)
- 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안 제18조~제20조)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43조, 제45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에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조성된 34억 2440만원을 이입 조치하는 등 향후 4년간 총 94억 원의 예산확보 예정 (붙임: 비용추계서)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19. 1. 24. ~ 2019. 2. 13.(의견제출 없음)
-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진행 중)
-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권고사항 반영

조문	구청장 방침	심의회 상정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 2.19.)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등에 따른 주거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한 긴급주거지원이나 입주에 필요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까지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 그리고 운용관리와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조성 계획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 34억 2440만원 이입조치와 일반회계 연도별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4년간 총 94억원의 재원 <표 1> 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표 1>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세입	기금	34	19	20	21	94
세입 재원 내역		종전 기금 이입 조치	일반회계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	

(단위: 억원)

- 또한,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와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에서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임기 3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하였음.

<b>양성평등기본법</b>	
<b>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b>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 )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울러, 안 제10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에서 제12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의 경우, 임시거소, 주거안정자금 용자 및 지원과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등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 그리고 신청처리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참고로 2018.12.31.기준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현황 <표 2> 은 8,773가구로 마포구 172,505세대의 약 5.0%에 해당됨.

<표 2> 마포구 마포하우징사업 사업별 지원대상

(단위: 가구, 2018.12월 기준)

계	주거안정자금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임시거소 (긴급 주거위기가구)
8,773 (비율, 100%)	420 (4.8%)	8,353 (95.2%)	수시

※ <표 2>의 세부내용은 별첨(최근 3년간 종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현황 포함)

- 이어서, 안 제13조(용자·지원한도 및 이율 등)에서 제17조(용자금의 회수)의 경우, 구청장은 용자금의 지원 및 상환과 임시거소 입주기간, 그리고 용자계약해지 조건에 따른 용자금반환 및 회수 방법 등 용자금 지원과 관리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였음. [ <표 3> 조별 주요내용]

<표 3> 용자금의 지원·상환·연장·반환·회수의 주요내용

구 분	조별 주요내용	비고
용자지원한도 및 이율 등	-입주보증금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대부이율 연 2퍼센트 이내 -주거안정자금 : 가구당 1백만원 이하	
용자금의 상환 등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경과 시 채권확보 조치
입주기간 및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임시거소 입주기간 : 6개월 이내 -상환기한 연장 : 천재지변 등 1차례 연장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재계약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용자계약해지 및 용자금의 반환	-임대기간 만료 -임대기간 중 타 시군구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포기 가구	
용자금의 회수	-회수사유 발생 : 즉시 회수 -명부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로 보증금 회수에 만전	협의 시행

- 또한, 안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제3조(경과조치 등)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안 제8조 및 제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 기금으로 이입 조치하도록 정하였음.

## 7.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총 2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마포구 저소득 주거 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긴급 주거위기가구 및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융자금 지원과 임시거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평균 20억원 씩, 총 6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통한 기금의 재원이 조성됨으로써 구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의 정기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등의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8. 기타자료(비용추계서,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등, 관계법령)

### 가. 비용추계서

(앞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전제 : MH마포하우징사업 추진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① 연간 총사업비 : 약 3,4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주택구입, 개·보수, 관리운영비 등	L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차 운영	임대보증금 등 지원
3,470	2,983	377	110

② 사업량 : 2019년~2022년 연간 사업목표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주택수	소 계	95	20	25	25	25
	자체매입	25	10	5	5	5
	LH.SH 협약	70	10	20	20	20
주거안정자금 지원 가구수		80	20	20	20	20

\*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량 및 예산은 변동 될 수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운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전환하여 확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세출 기금		34	19	20	21
□ 총 비용		34	19	20	21	94

4. 재원조달 방안 : 제5조 기금의 구성에 따른 재원조달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세입 기금		34	19	20	21
합계		34	19	20	21	94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김주형
연락처	02-3153-8812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비용추계)

1. 세입 :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승계 및 이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

가. 기금의 재원

(2018. 4/4분기 현재)

(단위: 원)

합계	조성액	초기재원			출연금	위약금 및 예금이자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구비	
3,480,611,030	1,975,000,000	497,000,000	462,000,000	516,000,000	500,000,000	1,505,611,030

나. 기금운용현황 (총액 대비 1.66%)

(단위: 원)

합계	용 자 금			예 치 금		
	소 계	회수시기경과 (채납액)	회수시기미도래 (용자금 원금)	소계	정기예금	공금계좌
3,480,611,030	67,700,010	7,700,010	60,000,000	3,412,911,020	3,291,356,173	121,554,847

2. 세출

구 분		금액(천원)	산출 근거	비 고
계		3,470,800		
유상 임차 (10호)	임 대 보증금	371,000	① 1형(1인가구) : 5세대×보증금(29백만원) = 145백만원 ② 2형(2~3인가구) : 3세대×보증금(42백만원) = 126백만원 ③ 3형(4인가구 이상) : 2세대×보증금(50백만원) = 100백만원	임차료 60% 전환 가능 (LH공사 임대료 기준 적용)
	월 임대료	6,240	① 1형(1인가구) : 5세대×6개월×임대료(월/8만원) = 240만원 ② 2형(2~3인가구):3세대×6개월×임대료(월/12만원) = 216만원 ③ 3형(4인가구 이상):2세대×6개월×임대료(월/14만원) = 168만원	(LH공사 임대료 기준 적용)
매입 주택 (10호)	주택 매입 (자산취득)	2,900,000	다가구 매입 : 1,450백만원 × 2개동(8~10세대) = 2,900백만원 *상황에 따라 원룸 및 빌라주택 구입	8~10세대 (개·보수 포함)
	중개수수료	25,200	거래금액 14억원 × 2건(상한율 0.9%) = 25,200천원 ※ 최대 중개보수 (VAT 별도) 적용	
	기타 경비	2,000	등기비용 등	
건물 관리비 및 회의 수당 등		30,000	건물 관리비용 및 입주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	
건물수리비		26,360	매입주택 기능보강비	
임대보증금 용자		100,000	500만원 × 20가구 = 100,000천원	이자수입 (연2% 이내 적용)
주거비용 지원		10,000	저소득층 및 주거 위기가구 이전 비용 등	

\* 주택 임차 및 매입시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및 최근 3년 기금 활용 실적

2018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현황

구분	계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정기/수시)	주거취약지원 (전세/매입)	긴급주거지원 (전세)
신청가구수 (입주대기자)	2,026 (420)	929 (94)	157 (30)	316/551 (121/142)	53/18 (27/5)	2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5,547가구 7,884명(중복제외)

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4,695	20,974	4,217	5,846	4,611	6,641	5,086	7,422	781	1,065

차상위 현황 : 2,806가구 4,002명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20	20	498	521	1,030	1,394	617	951	484	929	157	18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8년)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 50%	소득 70%	소득 100%
3인 이하	2,700,907	3,781,270	5,401,814
4인	3,082,601	4,315,641	6,165,202

최근 3년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건수	2건 (사업 1, 전세1)	0건	2건 (사업 2)
융자금	40,000,000원 (각 2000만원)	0원	40,000,000원 (1,000만원, 3,000만원)

## 다.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5. 28.]

##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2016. 1. 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14.,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③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존주택의 임차·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8. 28.]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